

창원지방법원 2024. 11. 22 선고 2024나106352(본소), 2024나106369(반소) 판결 [점유이전
등 ·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반소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4. 11. 22 선고 2024나106352(본소), 2024나106369(반소) 판결
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. 5. 3 선고 2022가단284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율, 담당변호사 박민건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

1. B
2. C
3. D
4. E
5. F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중현

변론종결 2024. 9. 27.

판결선고 2024. 11. 22.

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. 5. 3. 선고 2022가단284(본소),

2023가단12055(반소) 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 한다)들은 공동하여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에게 별지1 수목 목록 기재 각 수목을 수거하고, 경남 거창군 G 전 1732㎡를 인도하라.

나. 반소

1) 주위적 청구취지

원고는 피고들에게 경남 거창군 G 전 1732㎡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) 예비적 청구취지

원고는 피고들에게 경남 거창군 G 전 1732㎡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5. 6.

3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,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 제1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,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,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밑에서 1, 3행의 “R”을 “Q”으로, 10면 2행의 “AB”를 “Z”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영훈, 판사 이진석, 판사 김상욱

별지